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30356] 홈페이지: www.colorsidae.com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3.11.01] 대표이메일: colorsidae1@naver.com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6.02]



정 보 공 개 서

(주)칼라시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4. 06 .

[(주) 칼라시대]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0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504-367-7763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가맹사업팀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 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 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 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 칼라시대	 칼라시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0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4.10.07.	2004.10.07.	이상국	 (비공개)	0504-367-7633
	법인등록번호	110111-3094622	사업자등록번호	107-86-55469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임원)	이상국	 칼라시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이상국	 (비공개)	0504-367-7633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 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 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 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칼라시대-가죽복원 시스템’	개인 혹은 기업의 가죽쇼파 및 가구, 국산/수입차실내, 명품핸드백 등 천연/인조 가죽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즉석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수리, 복원하고 재사용 가능케 하는 서비스
상 호	(주)칼라시대 000지역 가맹점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41-0144459호
광 고	해당 없음	
그 밖의 영업표지	해당 없음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280,944,696	213,140,664	67,804,032	95,527,743	40,849,209	49,064,769
2023년	282,363,336	169,695,196	112,668,140	91,103,473	42,913,476	44,864,108
2024년	45,581,102	13,818,577	31,762,525	53,126,376	-86,578,101	-80,905,615

그 근거자료는 별첨과 같습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당사는 2004년10월07일에 법인사업자로 설립되어, 2024년 12월 현재까지 법인사업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위 기간 운영기간 동안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영업표지	연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매출액	상한	하한
 칼라시대	2022년	1)의 매출액과 같음		
	2023년	1)의 매출액과 같음		
	2024년	1)의 매출액과 같음		

[당사에서 추정 한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당사 전체 매출액의 100%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최근 3년간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주형기	대표이사	2016.01.04. ~ 2024.11.29	(주)칼라시대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이상국	대표이사	2024.11.29 ~ 현재	(주)칼라시대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 31일	1	0	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해당 없음	-	-	-
특수관계인	해당 없음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 없음	-	-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칼라시대	제품/서비스 사용 및 대가 수수	2005.09.08. 출원 2007.02.12. 등록	출원 제2005-0020700호 등록 제41-0144459호	(주)칼라시대	2027.02.1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https://www.kipris.or.kr/khome/main.do>

(칼라시대 지식재산권은 키프리스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II. 가맹본부의 [Color Si Dae 칼라시대] 가맹사업 현황

1. [Color Si Dae 칼라시대] 를 시작한 날: 2007년 08월 23일 (최초의 가맹점 영업개시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2. [Color Si Dae 칼라시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칼라시대	 칼라시대	주형기, 주양수	2007.08.23 ~ 2022.12.2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3(당산동3가, 5층)
(주)칼라시대	 칼라시대	주형기	2022.12.25. ~ 2024.11.2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7길 13(당산동3가, 5층)
(주)칼라시대	 칼라시대	이상국	2024.11.29. ~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0

3. [Color Si Dae 칼라시대] 업종

영업표지	업종	
 칼라시대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서비스	가족수리/복원 서비스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Color Si Dae 칼라시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23	23	-	21	21	-	18	18	-
서울	2	2	-	2	2	-	2	2	-
부산	2	2	-	2	2	-	1	1	-
대구	2	2	-	2	2	-	1	1	-
인천	1	1	-	1	1	-	1	1	-
광주	1	1	-	1	1	-	1	1	-
대전	1	1	-	1	1	-	1	1	-
울산	1	1	-	1	1	-	1	1	-
세종	-	-	-	-	-	-	-	-	-
경기	6	6	-	6	6	-	5	5	-
강원	-	-	-	-	-	-	-	-	-
충북	1	1	-	1	1	-	1	1	-
충남	1	1	-	1	1	-	1	1	-
전북	1	1	-	1	1	-	1	1	-

전남	1	1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2	2	-	1	1	-	1	1	-
제주	1	1	-	1	1	-	1	1	-

5. 최근 3년간 [칼라시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23	-	-	-	-	23
2023	23	-	2	-	1	21
2024	21	-	2	1	-	18

6. [칼라시대]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 칼라시대]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최근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해당 없음	-	-	-	-	-	-
특수관계인 (배우자)	해당 없음	-	-	-	-	-	-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 없음	-	-	-	-	-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 기준

[ 칼라시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8	17,150	해당없음	50,060	해당없음	3,633	해당없음	
서울	2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1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5	10,744	해당없음	47,320	해당없음	6,400	해당없음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1	해당없음						5곳 미만

*칼라시대 서울동부점,경기고양점,경기용인점,경기부천점,전북전주점,경남창원점은

24년 가맹본부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 매출액 산정 불가.

*당사의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점포 소유나 임대 필요 없는 이동형 서비스업으로
면적당 매출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 당사에서 추정한 가맹점 연간 평균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매출액= 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 * 10(매출액의 평균원가 추정비율: 약 10.00%)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자료와 해당 가맹점의 매출보고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5~15%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추정하였습니다.

위 표에 기재되는 모든 지역의 가맹점매출액은, **원칙적으로 최소6개월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 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칼라시대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칼라시대]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칼라시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18	4.121일 (약 11년4개월)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당사는 [ 칼라시대]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서울시,경기도, 충청남/북도,강원도 (인천시, 대전시 등 해당광역시 포함)	(주)칼라시대(본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0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이상국	 (비공개)	10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04.10.07. ~ 현재	○	○	○
경상남도 및 북도 (부산,울산,대구시 등 해당광역시 및 제주도 포함)	상호/명칭	주소		
	칼라시대-부산서부점	김해시 삼계동 1428-2 부영A  (비공개)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윤재석	 (비공개)	6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0.07.01. ~ 현재	○	×	×
전라남도 및 북도 (광주,전주시 등 해당 광역시 포함)	상호/명칭	주 소		
	칼라시대-전북전주점	전북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485 칼라시대-전주점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 가맹점수	
	정성현	 (비공개)	2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12.11.16 ~ 현재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에서 [2024년]에 [ 칼라시대]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8~29]쪽을 참고하십시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	-	-	-
광고	소계	 (비공개)	440	 (비공개)	-	 (비공개)
	-	-	-	-	-	-
판촉	소계	-	-	-	-	-
	-	-	-	-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귀하는 초도물품 비용(초도 원재료비 + 장비 및 공구비)만을 가맹점개설 비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해당 없음	-	-	-

※당사의 가맹계약은 초도물품대(초도원재료+ 장비 및 공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초도물품비 만을 가맹점개설 총비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당사의 가맹점 개설비용은 가맹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별도의 기관에 가맹점 개설비용을 예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 사업자피해 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해당 없음	
보험계약자	-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	
보험기간	-	
보험금액	-	
보장범위	-	
지급조건	-	
보험금의 수령절차	-	

※당사의 가맹계약은 초도물품대(초도원재료+ 장비 및 공구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초도물품비 만을 가맹점개설 총비용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당사의 가맹점 개설비용은 가맹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해당 없음	-	-	-	-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최종 법원명	판결(선고)일자	청구 취지 및 내용	판결 또는 화해 내용
해당 없음	-	-	-	-	-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
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피고	사건번호	선고 법원	선고 일자	죄명 및 범죄사실	선고 내용
해당 없음	-	-	-	-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 칼라시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점포 소유나 임대가 필요 없는 이동형 서비스업입니다. 다만 가맹사업자가 점포 운영을 가맹사업 홍보의 일환으로 희망할 경우, 그 임대 비용이 가맹사업 영업개시 기타비용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에는 점포 임대료 외에 4종의 소모성 소형 장비 및 공구(에어-콤프레서, 도장용 스프레이 건 등) 구비비, 2~4종의 홍보물 인쇄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해당 없음	-	-
보증금	해당 없음	-	-
기타 비용	1) 가맹 본부 2)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1) 확정금액 2) 추정금액

1) 초기 개설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	-	-	-
가입비	해당 없음	-	-	-	-
교육비	해당 없음	-	-	-	-
개점 행사비	해당 없음	-	-	-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0]	-	-	-
(현금)보증금	해당 없음	-	-	-
담보목적물	해당 없음	-	-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0
가입비	해당 없음
교육비	해당 없음
개점행사비	해당 없음
(현금)보증금	해당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23,200 ~ 22,700]				
초도 원재료비	가맹본부	17,600	해당 없음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기술교육 시작 전)	기술교육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원재료를 개봉하지 않은 조건)	-
초도 장비 및 공구비	가맹본부	4,400	해당 없음	계약체결 후 1일 이내 (기술교육 시작 전)	기술교육 종료 전 계약 해지 시, (원재료를 개봉하지 않은 조건)	-
기타 장비 및 공구비	협력업체 외 1개사	400~700	해당 없음	구입 시 바로 지급	-	-
홍보물 제작비	협력업체	300~500	-	홍보물 수령 후, 30일 이내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 표의 초도 원재료비와 장비 및 공구비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또 가맹사업의 지속적인 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의 구입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항목입니다.

기타장비 및 공구비와 홍보물 제작비는, 가맹점사업자가 지급대상(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의 해당업체와 직접 거래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거래할 경우, 가맹본부에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 )	당사의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점포 소유나 임대가 필요 없는 이동형 서비스업입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홍보의 일환으로 점포 운영을 원할 경우, 가맹희망자가 직접 입지를 결정합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색각이상(색맹) 증세를 가질 경우 교육 불가능, 그 외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운전면허자격증(2종보통 이상)을 소유할 것 만20세 이상일 것
종업원	색각이상(색맹) 증세를 가질 경우 교육 불가능, 그 외에 특별한 기준 없음	만20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 칼라시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8) 한편 귀하는, 영업개시 이전에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중 초도 원재료와 장비 및 공구비 [위 1-4]에 해당하는 비용을, 당사에 다음과 같이 일시불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1)	중도금(2)	...	잔금
금액(천원)	[22,000]	총액의100%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납부일		계약일+ 1일	-	-		-
비고	-	-	-	-		-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표사용료		해당없음				
리스료		해당없음				
광고분담금		해당없음				
판촉분담금		해당없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분담금		해당없음				가맹사업 운영에 모바일 상품권 이용하지 않음
교육훈련비	(주)칼라시대 (가맹본부)	일 440	(교육종료 후) 익일	(교육종료 후) 반환 불가	교육비	(내용: 기술개선 보충교육) 필요시 지급
교육훈련비	(주)칼라시대 (가맹본부)	일 440	(출장지도 후) 익일	(출장지도 후) 반환 불가	교육비	(내용: 현장출장 작업지도) 필요시 지급
기술자문 및 로열티	(주)칼라시대 (가맹본부)	월 99	익월 5일	반환 불가	로열티	가맹계약 후 첫1년 동안 로열티 면제 (13개월차부터 매월 청구)
간판류 임차료		해당없음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해당없음				
영업지역보장금		해당없음				
시설, 각종 기기의 교체, 보수비용		해당없음				
점포환경개선 비용		해당없음				
재고관리 비용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자율로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구비한 제품 직접관리
회계처리 비용		해당없음				가맹점사업자 자율로 직접 회계처리
POS 사용료						

		해당없음				
지연이자		해당없음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4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당사의 가맹사업은 기존에 없던 신규업종[예: 과거에는 가죽상품 손상 시 상품을 새로 구매하거나 손상된 가죽을 다른 가죽으로 교체하였지만, 당사의 경우 특수한 화학성 원/부재료로 손상부위만을 수리/복원하는 서비스를 공급]으로, 차액가맹금 산정을 위하여 적정 도매가격을 비교/계산할 수 있는 동종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매출관리	가맹점사업자의 월 매출현황 조사	매 월별 1회	가맹점사업자가 매월의 매출 보고서 작성, 가맹본부에 익월 5일까지 제출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0]				
	해당 없음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 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 칼라시대] 운영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업권 양도가 필요한 경우,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하에 영업권이 양도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당사는 양도를 승인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가맹점사업자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도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경우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를 신청했고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는 가맹계약의 양도/양수를 승인합니다.)

양도인은 영업권을 양도하면서 당사에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을 양도하기 전에, 당사에 지불할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모두 지불하여야 하고 영업권은 실비로 양도 되어야 하며, 양수인으로부터 영업권 비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업권 양도 후 양수인은, 기존과 같은 당사와의 가맹계약을 승계하고 당사로부터 기술이전교육을 이수한 후 가맹점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초도 원재료와 장비 및 공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 초기 개설비용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개설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27]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호·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는 계약을 종료한 이후에도 2년간 당사로부터 전수 받은 기술을 비밀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당사가 금전적 혹은 금전 이외의 영업적, 명예적 손실을 입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손해배상 할 책임을 지닙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본인의 사정이나 제안 등의 사유로 가맹계약을 종료 혹은 해지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허가 없이 계약 종료/해지일로부터 만 2년간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동일한 업종의 경쟁 사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가맹사업의 가맹계약서 상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재고량,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일정범위 내(33%~66%)에서 반품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가맹계약서 상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사는 해당물품의 반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 칼라시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 칼라시대]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

· 용역 · 설비 · 상품 · 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 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	-	-	-
계			-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 칼라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 없음	-	-	-	-	-
계				-	-

2) 당사가 [ 칼라시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	-	-	-	-
-	-	-	-	-	-	-
계					-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유니버설 클리너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
칼라클린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레더 컨디셔너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

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동종 경쟁업체	모든 상품 (원,부재료 및 장비, 공구)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해당 없음	-	-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천연/인조가죽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시트,가구, 의류 및 소품의 수선업 차량-인테리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표면-수리업 차량-인테리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세척업	 칼라시대	해당 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30~50만명 당 1가맹점 (일반적으로 당사의 가맹사업은 이동형서비스업으로, 점포구비가 필요치 않음)	가맹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인구 30~50만명 당 1점포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운영을 겸하는 방식을 원하는 경우)	가맹계약서 별지에 구역(지도)으로 표시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재건축/재개발, 관련기관 입주, 아파트 입주 등으로 급격한 상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해당 상권의 거주/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소비자의 기호변화, 경쟁 영업표지의 입점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가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얻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가맹점 영업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 칼라시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 칼라시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칼라시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 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 1-다항 • 제16조 1항 • 제17조 2항 • 제25조 1-가,나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25조 1-라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25조 1-마항
○ [ 칼라시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25조 1-바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제14조 1-다항 • 제16조 1항 • 제17조 2항 • 제25조 1-가,나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제9조 2,3항 • 제13조 3항 • 제25조 1-가,다,라,바항 • 제26조 5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14조 2항 • 제19조 1,2항 • 제28조 3항
○ [ 칼라시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제25조 1-가,바항 • 제26조 5항 • 제28조 3,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26조 2-가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제26조 2-나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 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6조 2-다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제26조 2-라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2-마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 2-바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제26조 2-사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제26조 2-아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제26조 2-자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 재계약 시, 기술자문료 및 로열티, 원재료 의무구입액,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기준이 수정될 수 있음	제8조 1~3항 제9조 1~6항 제11조 2항

	제13조 1~3항 제16조 1~2항 제17조 2항
○ 가맹 재계약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쌍방향의에 의해 영업지역이 변경될 수 있음	제11조 2항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원칙적으로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수정은 그 사유가 시장의 상황과 사회적 통념상 타당한 경우에 제안되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아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고 또 동의를 얻은 계약 조건이나 영업방침의 수정을 귀하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이 종료된 후 그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환매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 해당 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양도인의 직계 존비속일 경우 ○양도인의 타당한 양도사유가 있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을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가맹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맹 계약의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해, 양도인은 양도 전 당사에 지불해야 할 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전액 지불하여야 계약이 양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인은 당사의 지식재산권 유

지와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동일한 서비스 품질 제공을 위해 당사의 기술이전 초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의 직계존비속이고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양도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합니다. 그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를 신청했고 양수인이 당사의 가맹점 운영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사는 가맹계약의 양도/양수를 승인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초도 원재료와 장비 및 공구 중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 등으로 인하여 가맹점 초기 개설비용이 일반적인 신규 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개설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 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상속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상속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가맹점운영권 상속 완료	기술이전 교육수료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대리 행사신청→당사 담당팀 검토(대리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여부 통지→가맹점운영권 대리행사 완료	기술이전 교육수료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당사와 가맹점 사업자가 협의,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업무 위탁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위탁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승인 여부 통지 →가맹점운영권 업무위탁 완료	기술이전 교육수료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가 계약한 영업지역 내에서] 귀하가 [ 칼라시대]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 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의 차량, 가구 등 가축 상품의 표면을 “가죽복원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리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허가 여부 통지→완료	문의: 가맹팀  (비공개)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 칼라시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0:00 ~ 18:00 (8시간)	일요일, 공휴일 제외 영업	문의: 가맹팀( (비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가맹사업은 기본적으로 가맹점포(영업장) 운영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입니다. 다만 귀하가 효율적인 광고 및 홍보를 위해 가맹점포(영업장)를 별도로 운영할 시, 당사는 종업원 및 근무 형태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포(영업장)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가맹점포를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해당 없음	-	-	-	-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 칼라시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	-	-	-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	-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해당 없음		
개별 행사	해당 없음			-	-
할인카드·멤버십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	-	-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당사자간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에 의하여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금15,000,000원**을 위약금[「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가맹사업 계약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금 15,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성격을 갖습니다.

{다 음}

1. 가맹점사업자가 제8조 1항의 허가 받지 않은 지역에서 가맹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업을 광고/홍보 혹은 운영하였거나,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가맹사업을 광고/홍보 혹은 운영한 경우
(가맹계약서 상 제25조 1항의 다호)

※참고사항: 가맹계약서 상 제8조 1항

1. 이 가맹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합의하여 가맹점사업자는 한국 내 [] 지역에서 가맹점을 개설한다. [별첨1. 참조]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과 인적네트워크, 기타 영업/운영상 자산의 보호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정한 영업방침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계약서 상 제25조 1항의 바호)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이란, 가맹본부의 위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지정한 모든 류의 영업 및 사업운영 방침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의 사전허가 없이, 가맹본부의 타 가맹점사업자에게 위 자산과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구입 및 유통하여 상거래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부인 양 혹은 가맹본부의 위 자산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광고/홍보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행위 등은 위 가맹본부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위 자산을 심각히 훼손한 것으로 간주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맹계약서 상 제26조 2항의 라호)

- A)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B)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 1) 그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2)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3) 그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 C)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

3)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나 가맹계약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임원이 사기, 횡령, 배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본 가맹사업의 명성 혹은 신용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손해배상액 예정성격으로서 가맹본부에 위약금 금 15,00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약금청구 시, 가맹본부의 위 위법행위 여부는, 관할법원의 민/형사 소송 시 유죄확정 판결이나 형의 선고를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가 상호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훼손 여부의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관련 민사소송 시 패소의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계약 당사자가 상호 확인 및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는, 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위법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및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청구한 위 위약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0일 내외	[12~13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0	
사업 설명·상담	- 인근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39~3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가맹점희망자가) 점포운영 원할 시, - 입지선정 - 입지주위 점포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20~17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16	
가맹개설금 결제	- 가맹점 초기개설금 결제	D-15	
교육 실시	- 기술이전교육 실시	D-14~4(10일)	
가맹점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의 가맹사업은 무점포 형태의 이동형 서비스업이라, 점포환경개선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3. 경영활동 자문

해당사항 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 칼라시대]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해당 없음	-	-	-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의 가맹사업은 무점포 형태의 이동형 서비스업이라, 기본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점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해당 없음					
· · ·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Color Si Dae** 칼라시대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제반지식을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및 서비스 소개 “가족복원시스템” 기술이전 각종 마케팅 방법 등	1~4명의 집단강의, 실습/현장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필수 교육
보충 교육	신기술 및 개선기술 이전 등	집단강의	매년 12월 (첫째 주 중) 1일	매년 선택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Color Si Dae** 칼라시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0일	해당 없음	최초 계약 시 이수
보충 교육	1~2일	해당 없음	매년 선택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귀하의 직계존비속이나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나 당사자의 직계존비속, 가맹점 공동 운영자를 제외하고, 계약당사자의 직원이나 제3자는 원칙적으로 당사의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제3조 1~6항에 따라, 기한 종료 후 30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보충 교육은 선택적 이수사항이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음에 따른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교육 불참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신기술 혹은 개선기술이 적절한 시간에 충분히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	•	해당없음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해당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해당없음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

에는 당사 가맹팀( )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 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http://www.colorsidae.com>) 또는 가맹사업정보제공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V.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1.물품 구입 및 임차 -

가)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원·부재료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